

## 회 신

귀 문의 경우 공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인 3년 내에 회사부도 등으로 인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공원개발사업시행허가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현재 보유중인 자본을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의 변제에 사용하라며, 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제1호 규정의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정13407-1197, 2000.10.13)

#### 4. 연부취득중에 매수자 명의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 【질 의】

지방자치단체(시)가 1994년에 택지 개발하여 분양한 택지를 1995년에 법인체인 당사가 택지매매대금을 3년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분양 계약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뒤 2000년 8월 현재까지 중도금 일부 및 잔금 일부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년 9월에 택지를 분양한 지방자치단체(시)장의 승인을 얻어 택지 분양 계약에 따른 당사의 권리, 의무를 개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분양계약자 명의 변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사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와 3년 분할 납부 분양 계약후 잔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부후 연부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으므로 당사가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환급 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